

2026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서울) 상주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창업팀(기업)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6. 5. 22.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재단법인밴드

I. 모집 개요

모집유형 : 회원기업(상주)

모집규모

센터명	상세주소	모집규모
서울1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 9층	15개소

모집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자(개인·법인), 사업자 미등록 창업팀*, 사회적경제기업**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팀도 지원이 가능하나, 1년 이내 법인 설립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계획을 명확히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함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주체 포함

상주기간: 협약체결일 ~ 최대 2년(24개월)

* 상주기업은 연장심사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 연장 가능
단, 이전에 퇴거 경력이 있는 재상주기업은 연장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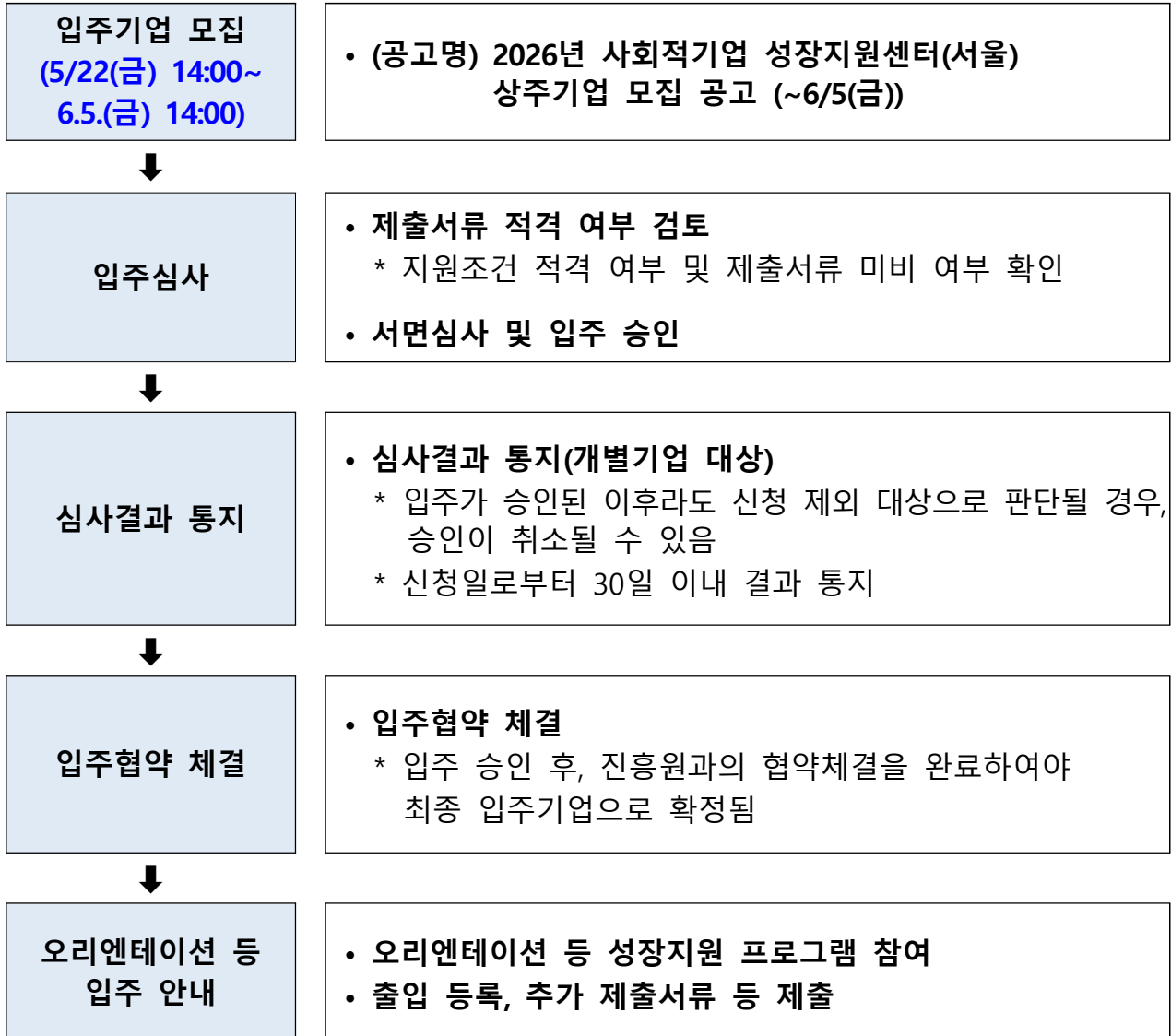
□ 상주기업 지원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또는 유지계획을 보유할 것
- 매출액, 고용인원(취약계층 포함), 투자유치 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할 것
- 자진 퇴거하거나 상주기간 만료로 퇴거한 기업은 퇴거일(협약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재상주 신청이 가능함
 - 단, 입주기간 중 경고 3회 이상을 받아 퇴거 조치 되었거나, 연락 두절로 퇴거 조치된 기업은 재상주 신청 제한
 - 퇴거기업의 상주기간은 이전 상주기간 및 신규 상주기간의 합산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상주기업 제한 조건

- 자진퇴거하거나 상주기업 협약 만료로 퇴거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중도포기, 지원중단으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현재 참여제한 중인 제재대상인 경우
-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동일 목적 기관에 중복하여 상주한 경우
- 휴, 폐업 상태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인 경우
- 그 밖에 진흥원장이 멤버십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절차



II.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전용 사무공간 제공

- 공용 비즈니스 공간(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공용 OA장비(복합기 등) 제공
* 센터 회의실, 공용공간 등의 시설은 입주기업 누구나 이용 가능

□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교육)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SVI,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등 공공행정 교육 및 회원기업, 지역사회 수요 기반 필요 교육 운영
- (네트워크)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간 워크숍 및 네트워킹 행사, 지자체 및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간 상시적 교류 협력 등
- (멘토링) 기업별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경영관리, 회계·세무, 법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별 멘토링 운영
- (자원연계) 진흥원 및 지역 내 다양한 민간·공공기관 자원을 연계하여 회원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 지원

□ 상주기업 준수사항

- 입주신청서에 기재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 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한 참여
- 공고, 지침, 협약 및 세부 관리기준 숙지와 준수
- 회원기업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 및 의견교류
* 상주기업별로 1인 이상 참여(대표자 외 타 직원 참석 가능)
- 회원기간 유지 기간 내 고용, 매출, 투자유치 등 성과자료 제출
* 고용, 매출 등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 경고 조치(누적 3회 시 퇴거)
- 기타 진흥원장이 정하는 요청하는 사항

III.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 2026.5.22.(금) 14:00 ~ 2026.6.5.(금) 14:00

* 신청기간 필히 준수, 마감시간 이후 결격

□ 신청방법(온라인)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①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기업회원)
 → ③상단 탭에서 '사업신청' → '통합사업신청' 클릭 ④'사업분류'에서 '전용사무공간' 클릭 → ⑤신청할 센터 공고 선택 → ⑥공고 선택 후 "신규" 신청 → ⑦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등록 → ⑧최종 제출

※ 공고명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센터에 신청

- 2026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서울) 상주기업 모집 공고 (~6/5(금))

□ 신청서류

유형	연번	신청서류	제출서류
공통 * 모두 제출해야함 * 인증 사회적기업은 서식4 제출 제외	1	멤버십 신청서	서식1
	2	전용 사무공간 신청서	서식2
	3	상주기업 목표기술서	서식3
	4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서식4
사업자 (법인·개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는 제외	-
	2	사업자등록증	-
	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4	재무제표(2025년 결산자료)	-
	5	사업자 소개서	자율양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팀	1	창업팀 소개서	자율양식
	2	창업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 증명서	-
가점사항 * 해당 시	1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추천서 및 공문 * 단, 기업명(성명), 추천사유, 추천기관 및 직인날인 등 정보가 기재된 추천서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공문 으로 수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되어야 함	-
	2	진흥원 교육 플랫폼(소셜클래스) 필수강의 2강 이상 수료증 * 소셜클래스(https://edu.seis.or.kr)에서 발급	-
	3	사회적 가치 지표(SVI) 측정 확인증 * 사회적가치 포털(https://www.seis.or.kr/svi) → [SVI 측정] → [SVI 측정결과]에서 발급	-

※ 각 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 내 첨부자료 항목에 맞게 업로드

※ 첨부서류는 "번호_서류명_기업명(ex. 1. 멤버십 신청서_가나협동조합)"으로 저장
하여 업로드

※ 모든 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5.5.~)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함

IV.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서울) 시설 안내

센터명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서울) 소셜캠퍼스온서울1센터	
주소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286 아인빌딩 8, 9층	
이용 시간	주중 09:00 ~ 18:00 (주말·공휴일 사용 희망 시 운영사무국 협의 필요)	
출입 방법	출입문 지문인식시스템 활용	
시설 사진		
	상주공간	소셜라운지
		
	이벤트홀(대회의실)	화상회의실
		
	소셜큐브	공유스튜디오

V. 기타사항 및 문의사항

□ 기타사항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기업 승인 및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상주기업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멤버십 회원기업이어야 신청 가능
 - * 기존 멤버십기업이 아닌 경우, 상주기업 신청 '전용 사무공간 신청서'와 함께 '멤버십 신청서' 필수 제출
- 센터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상주하고자 하는 센터 1개소만 신청
 - * 2개 센터 이상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무효 또는 선정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 있음

□ 문의사항

- (전산관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1661-4006
- (입주관련) 소셜캠퍼스 온 서울1센터 운영사무국

센터명	전자메일	연락처
서울1	sco1@ikosea.or.kr	02-461-8790~3 070-5099-5040~1

[별표 02] 전용 사무공간 심사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전용 사무공간 심사표

신청기업명		대표자	
평가일	20 . . .	평가위원	(서명)

심사항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공간 활용계획 (35)	- 사업추진 시 전용 사무공간의 활용도	20점	20	18	16	14	12
	- 타 상주기업과의 협업 노력 및 의지	15점	15	13	11	9	7
센터참여도 (30)	- 성장지원센터 이용률(계획) * 신규 상주기업은 계획으로 평가	15점	15	13	11	9	7
	-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석률(계획) * 신규 상주기업은 계획으로 평가	15점	15	13	11	9	7
사회적기업 진입가능성 (20)	- (예비)사회적기업 진입계획의 구체성 *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 필요성'으로 평가	10점	10	8	6	4	2
	- 대표자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의지 *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지속 의지'로 평가 * 진흥원 포털 필수강의 2강 이상 수료 시 8점 이상	10점	10	8	6	4	2
기대효과 (15)	- 공간지원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	15점	15	13	11	9	7

소 계(A)							
가·감점사항		배점	해당여부				
가점사항 * 건당가점	-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 측정	3점					
	- 지자체·공공기관 추천	2점					
감점사항 * 건당감점	- 경고 1회당(2점, 최대 4점)	2점					
	- 성과지표 등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비협조	3점					
소 계(B)							
합 계(A+B)							

평가의견	
-------------	--